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지분율피리도와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임유니** · 박희우***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국세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고위공직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경우 해당 기업의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에 제시된 대규모 기업집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해당 기업의 지분율피리도를 산출 후 변수로 활용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분율피리도를 산출해볼 수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국세청 출신 공직자가 해당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분율피리도를 구성 요소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분석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이유로는 우선 이사회회의 특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기업 최고위 의결기구인 이사회회의의 내용이 공시되므로, 기업 경영의 중대사안을 이사들의 찬·반 의견을 통해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세부적인 전략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사회회의에서 다루지 않게 된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조세회피에 관련된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되어 과세당국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면 해당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또한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였던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온 정치적·사회적 네트워크와 자신들의 명예를 중시하므로, 조세회피 활동에 대한 과세기관으로부터의 적발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감안하면서까지 공시되는 재무제표상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조세회피 및 조세포탈에 적극 관여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 기업에서는 그들의 보충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지,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통해서 기업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조세회피까지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조세회피, 지분율피리도, 소유권, 통제권,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

* 본 연구는 한국세무학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 춘계 신진연구자 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행되었습니다.

**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박사, uniqu22@catholic.ac.kr, 주저자

***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phwcpa@catholic.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20년 6월 22일

1차수정일 2020년 9월 7일

게재확정일 2020년 9월 28일

I. 서 론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분유평리도와 정부기관 출신 사외이사가 해당 그룹사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정부기관 중에서도 국세청에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외이사가 재벌기업에 근무할 때 해당 재벌기업의 지분유평리도와 맞물려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조세회피는 법률을 완벽히 준수하여 조세회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부담이 낮은 절세전략에서부터 과세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수준이 상당히 높은 탈세 및 공격적인 조세 전략까지 양극단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Hanlon et al. 2010).

조세전략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주체가 최고경영자임을 감안할 때 기업의 조세회피에는 임원(상근임원/비상근임원)의 특성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으며(이 건 외 2015), 재벌기업에서 최고경영자(지배주주)는 기업 경영을 총괄하므로 사외이사를 새로이 선임하고 교체하는 등의 기업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이창민 외 2017).

사외이사의 신규 선임 및 교체 권한은 최고경영자에게 있으므로 사외이사 임면에는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의중이 반영될 것이다. 사외이사는 그동안의 업무경력이 해당 기업 소속이 아니었으므로, 사외이사의 정치·경제적 배경 요인이 사외이사로의 선임에 있어 주요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이문영 외 2012 ; 이 건 외 2015 ; 임태균 외 2015 ; 임태균 외 2016 ; 이창민 외 2017 ; 김현진 외 2019 ; 박준호 외 2019 ; Dyreng et al. 2010 ; Zheng et al. 2015 ; Chansog Kim et al. 2016 ; Jae Yong Shin et al. 2018).

자원의존이론¹⁾에 의하면 정치적으로 연계된 사외이사는 장기간의 공직생활로 인하여 인적·사회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정부 당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업무 경험 및 법률(세법)에 관한 전문가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공고화된 관계를 활용하여 규제당국에 해당 기업에 대한 적극적 변호를 마다하지 않기도 한다(Jae Yong Shin et al. 2018). 물론 공직자 출신 사외이사의 역할이 대정부 로비 기관에 머무른다는 비판적 평가를 받기도 한다(이 건 외 2015 ; 이창민 외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경영자는 경영성과에 대한 압박과 책임을 느끼므로 당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정치적·사회적 배경이 있는 사외이사를 영입하여 사외이사의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가적 지식을 활용하는 등의 경영전략

1)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론 중 하나로 Nienhüser, Werner에 의하면, 자원의존이론의 가정은 중요한 자원들에 대한 의존은 조직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의 결정과 행위는 특정한 의존적 상황 하에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A fundamental assumption of Resource Dependence Theory (RDT) is that dependence on "critical" and important resources influences the actions of organizations and that organizational decisions and actions can be explained depending on the particular dependency situation.).

을 세울 수 있다.

경영자는 경영전략의 일환으로써 조세 전략을 통해 납부 세금을 줄이려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절세와 탈세를 아우르는 조세 전략이라는 광의의 개념은 납부 세금을 줄인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업에 가져다줄 수 있지만, 기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주요한 관심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할 수도 있다. 지분율과리도가 높은 재벌기업의 납부세금의 규모가 국가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재벌기업의 조세회피행위는 규제당국으로부터 적극적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일 조세회피가 드러나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크기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 출신의 사외이사가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하여 선행연구에 의하면, 최고경영자가 국세청 출신의 사외이사를 통해 조세회피를 시도하려는 유인이 높다 하더라도, 국세청 출신의 사외이사는 규제당국의 규제와 감시정도를 고려하여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상대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김현진 외 2019).

규제기관 출신, 특히 국세청 출신 인사를 기업의 사외이사로 영입하려는 주된 이유는 조세절감이라는 조세전략의 측면이 크지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재벌기업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또한 부담하는 세금의 양도 상당하므로 규제당국으로부터 조세절감 및 탈세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감시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자신들을 고용한 기업에 충성하여 재무제표 수치로 드러나게 되는 조세회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외이사라는 제한된 역할과 재벌기업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그렇지 아니한지에 대해서 실증분석해보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지분율과리도와 조세회피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가설을 세운다. 제Ⅲ장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과 표본에 관한 서술을 하고, 제Ⅳ장은 실증결과를 제시한다. 제Ⅴ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맺는다.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1. 지배구조(사외이사 선임)와 조세회피에 관한 선행연구

이사회는 기업의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고안된 기구로서 기업의 대표적인 모니터링 장치이다(서영미 2017). 그렇지만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역할론에는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이문영 외(2012)는 사외이사 중 과거 해당 기업 혹은 계열사 임원 여부로 측정한 회색이사의 비율은 7.1%였으며, 사외이사 중 회색이사가 존재하는 기업은 12.8%에 달한다고 보

고한 바 있다. 이 건 외(2015)에서도 2014년 10월 기준 국내 굴지의 로펌에 국세청 출신 인사가 64명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손 혁 외(2015)에서는 사외이사의 감시기능은 최고경영자와 사외이사 간의 사회적 관계로 측정한 친밀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고 제시하였다.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주체는 최고경영자이고, 이들은 기업 내에 미치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기업의 경영전략을 뒷받침하려는 목적 등으로 인적·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사외이사를 해당 기업에 영입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사외이사도 그들 스스로 자신을 선임해 준 기업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활용한 적극적 변호인의 역할을 자처할 수 있다. 또한 언론과 선행연구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대(對) 정부 로비스트로서의 역할을 자임할 수도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치적으로 연계된 기업은 조세부담 수준이 낮으며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Faccio 2010).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기업은 그 자체가 정치권과 연계될 수 없으면, 정치적으로 연계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꾸준히 사외이사의 영향력을 기업 경영활동에 활용하려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벌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대규모 기업집단이 과거로부터 정치권과 연계되어 발전을 거듭하여 왔기에 정치·사회적으로 연계된 배경을 지닌 사외이사가 기업과 연관되어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²⁾.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재벌은 완화된 감시체계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해왔고, 사외이사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업의 자원으로 활용해왔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 실질 조세비용 규모도 대단할 것이다. 그렇기에 직접적으로 그 이유가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모든 재벌은 아닐지라도 일부 그룹사에서는 차별적으로 국세청 출신의 사외이사를 꾸준히 영입하였다.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영입하려는 이유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원인을 통해 파악해볼 수 있다. 최고경영자가 세무 전문가인 사외이사를 활용하여 납부 세금을 줄이려 하고, 복잡한 조세 관련 법률들을 해당 기업에게 유리하도록 해석에 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하며,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보유한 과세 당국과의 친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것이고, 해당 사외이사의 경험과 배경을 활용하여 세무조사라는 외부적 위협에서도 대처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으로서 국세청의 기능은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조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세 법률의 해석에서부터 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납세자에 대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이 될수록 더욱 세법에 대해 전문가적 지식을 갖추게 되며, 해당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 또한 상당히 두텁게 형성될 것이다. 세무 전문가인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는 자신들의 전문가적 견해를 활용하여 기업의 조세전략에 기여

2) 박준호 외(2019)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달리 기업이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의 로비 행위를 불법으로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전직 관료를 영입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치적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고, 복잡하고 광범위한 세법 조항 해석에 있어서 기업에 유리하도록 자문을 제공하며, 국세청 세무조사라는 외부적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 경영자의 부정이 적발되면 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최고경영자는 사외이사 선임 시 국세청을 포함한 관료 출신의 사외이사를 선호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세무 전문성을 지닌 임원을 보유하게 된다면 조세회피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조세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이건 외 2015).

대규모 기업집단과 조세회피 정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소액주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하였다(이윤경 2015 ; 서영미 2017). 이윤경(2015)과 서영미(2017)의 연구에서 모두 지분율과리도가 클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한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그렇지만 상기 연구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았다.

최고경영자의 경영권 수준과 조세회피를 국세청 출신의 사외이사 선임 여부를 고려하여 분석한 김현진 외(2019)의 연구에 의하면, 최고경영자 경영권 수준과 조세회피는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으나, 최고경영자의 경영권 수준이 높아질수록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의 선임 여부와 조세회피는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최고경영자의 경영권 수준이 높은 경우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과세당국의 규제와 감시를 고려하여 해당 기업의 조세회피를 억제할 것이라 추론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분율과리도가 커질수록 조세회피는 증가하지만, 세금과 직접적 연계가 있는 국세청 출신의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기업에서는 경영권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세회피는 줄어들었다. 그러므로 이처럼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난 원인에 대해 실증 분석해 볼 가치가 있으며, 과연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조세당국의 주된 관심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수치로 드러나는 조세회피에까지 관여할 것인지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따라 다음과 같이 귀무가설을 세우고자 한다.

가설 1 : 대규모 기업집단의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의 지분율과리도를 고려한 조세회피와 관련이 없다.

2. 지분율과리도에 관한 연구

지분율과리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분율과리도가 클수록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여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공시수준이 감소하고(심호식 외 2010), 지분율과리도가 클수록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유인이 강해지기에 이익조정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고(Kim and Yi. 2006), 지분율과리도가 클수록 재무분석가 이익

예측치의 오차가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다(선우혜정 외 2010). 정현욱 외(2015)에 의하면 지분율괴리도가 클수록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권대현 외(2012)에 따르면 소유·지배괴리가 큰 대규모 기업집단의 회사일수록 지배주주의 행동을 보호하려는 유인이 더 커지기에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은 더 약화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김명인 외(2007)에 의하면,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피라미드 형태의 계열사 형태와 계열사 사이의 상호출자에 의한 지배주주의 간접지배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배주주의 소유권(즉 기업의 현금흐름 중 자신의 실질지분율)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통제권(즉 지배주주의 계열사간 상호출자, 특수 관계자 등을 통한 간접 통제권을 반영한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지배주주가 통제권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경우, 일반적인 지배주주 감시 장치 즉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또는 내부통제제도 등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여당에서는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계열회사까지 더해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는 같은 회사 사외이사를 더 이상 맡을 수 없다는 사외이사 임기제한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정하였고,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³⁾ 우리나라의 상법은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제382조 3항)로 정의하면서 그 구성요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있다.⁴⁾

관련 선행연구인 서영미(2017)에서는 지분율괴리도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지분율괴리도를 그 구성요소(소유권과 통제권)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유권이 커질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통제권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기업 외부로의 현금 유출을 제한하여 배당권(소유권, Cash-Flow Right)의 증가에 따른 효익을 추구하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언급하였다.

지분율괴리도와 보수주의 수준을 살펴본 김명인 외(2007)의 연구에서는, 소유권(Cash-Flow Rights)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보수주의 정도는 증가하고 통제권(Voting Rights)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보수주의 정도는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통제권과 소유권을 별도의 변수로 분리하여 분석을 실시한 선우혜정 외(2010)에서는 통제권이 높아질수록 이익예측치의 오차가 증가하였으나 소유권은 이익예측 오차와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재무분석가들의 이익예측치

3) 매일경제, 2020.01.14. “與 ‘사외이사 임기제한’ 밀어붙여...준비 안 된 재계 ‘당혹’”

사외이사 재직 연한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선임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된다. 즉 2020년 2월부터 3년 임기 사외이사는 연임까지만 가능하다.

4)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 대표이사의 선출, 업무 집행에 대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에서는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하며,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 따르면 사외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회사는 사외이사 임기(1년·2년·3년 등)를 정관에 규정한다. 현재는 연임에 제한이 없다.

가 추후에 발표되는 기업의 실제 이익보다 더 높은 낙관적 예측을 하는 추세는 지배주주의 통제권이 증가하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분율피리도는 그 구성요소인 소유권과 통제권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는 경우 지분율피리도 전체로 분석을 진행하는 경우 보다 자세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에 지분율피리도를 소유권과 통제권으로 구분한 연구가 필요하며,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의 조세회피 조력행위가 발생한다면, 소유권과 통제권 중 과연 무엇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다음의 귀무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1 :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소유권과 관련이 없다.

가설 2-2 :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통제권과 관련이 없다.

III. 연구방법 및 연구표본

1. 연구모형

가. 지분율피리도의 측정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피라미드 형태를 보인다. 소유주 또는 지배주주의 소유권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통제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Claessens et al. 2000, 2002 ; Lins 2003 ; Lemmon and Lins 2003 ; 이윤경 2015 ; 서영미 2017).

지분율피리도는 통제권과 소유권의 차이로, 지배주주는 부의 이전(tunneling)과 상호 보조(propping)를 통해 계열사에게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고자 하지만 이러한 행위의 반대급부로 소액주주의 부(富)는 침해당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분율피리도(wedge)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에 제시되어 있는 지배주주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수집하여 지분율피리도를 다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산출하였다.⁵⁾

5) 지분율피리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률로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기에 상호주(g)는 제외하였다.

지분율과리도 측정 방법

$$\begin{aligned}
 & \bullet \text{ 소유권(Cash-flow Rights)} = \frac{\text{동일인(B)} + \text{친족(C)}}{\text{총발행주식수(A)}} \\
 & \bullet \text{ 통제권(Voting Rights)} = \frac{\text{동일인(B)} + \text{친족(C)} + \text{비영리법인(D)} + \text{임원(E)} + \text{소속회사(F)} + \text{자기주식(G)}}{\text{총발행주식수(A)}} \\
 & \bullet \text{ 지분율과리도(Wedge)} = \text{통제권(Voting Rights)} - \text{소유권(Cash-flow Rights)}
 \end{aligned}$$

소유권은 배당권(cash-flow rights)으로써 총수 일가(기업집단포털 내 동일인)가 대규모 기업 집단 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고 있는 지분으로 동일인 및 친족 지분의 합을 나타낸다. 통제권(지배권, 의결권/control rights, voting rights)은 총수 일가가 실제로 기업집단 내 종속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으로 총수, 친족, 임원, 비영리법인, 소속회사 지분의 합을 의미한다.

나. 조세회피의 측정

이윤경(2015)은 지분율과리도와 3년 누적 유효법인세율(GAAP-ETR), 3년 누적 현금 유효법인세율(CASH-ETR)을 조세회피 측정치로 사용하였고, 서영미(2017)는 조세회피성향 측정치로 Desai and Dharmapala(2006)에서 제시한 DD_BTĐ를 사용하였다.

최기호(2018)는 조세회피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조세회피 측정치를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 : ETR), 회계 이익과 과세소득 차이(Book Tax Difference : BTD), 절세수단 이용(Tax Shelter : SHELTER), 미인식법인세수익(Unrecognized Tax Benefit : UTB) 등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효세율(ETR)을 조세회피 측정치로 사용한다. 유효세율은 회계상 법인세비용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회계상 유효세율(GAAP-ETR)과 법인세납부액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현금유효세율(CASH-ETR)로 구분된다. 1년 유효세율로 측정하였고, 각각에 (-1)을 곱하여 최종 산출하였다. GAAP-ETR은 손익계산서상 수치를 바로 분석에 이용할 수 있기에 상대적으로 손쉽게 조세회피를 측정할 수 있으며, CASH-ETR의 경우에는 기업이 실제 납부한 금액을 활용하므로 실제적인 조세회피 수준을 측정해낼 수 있다.

$$GAAP-ETR = \frac{TAX\ EXPENSE}{IBT} \quad \text{식 (1)}$$

GAAP-ETR = 조세회피 측정치(회계상 유효세율);
 TAX EXPENSE = 법인세 비용;
 IBT =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CASH-ETR = \frac{TAX PAID}{IBT} \quad \text{식 (2)}$$

CASH-ETR = 조세회피 측정치(현금유효세율) ;
 TAX PAID = 법인세부담액 ;
 IBT =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또한 본 연구에서는 회계 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도 조세회피 측정치로 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회계 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BTD)를 산출하기 위하여 우선 과세소득을 추정하여야 한다. 과세소득의 추정은 최원욱 외(2011)을 참조하여 당기 법인세부담액을 법인세최고세율로 나누어 추정한다.⁶⁾ 최종적으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BTD)는 재무제표의 당기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과세소득 추정치를 차감한 후 기초 총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다(이 건 외 2015).

$$BTD_t = \frac{IBT_t - \widehat{TI}_t}{ASSET_{t-1}} \quad \text{식 (3)}$$

BTD = 조세회피 측정치(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 ;
 IBT =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 ;
 TI = 과세소득 추정치(=법인세부담액/법인세최고세율) ;
 ASSET = 자산총액.

Desai et al.(2006)에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에 재무보고 목적의 이익조정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영자의 이익조정으로 인한 부분의 영향력을 기초 총자산을 이용해 경감시켰으며, 식 (1)을 통해서 추정된 잔차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간주한다. 즉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BTD)에서 총 발생액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조세회피 추정치(DD_BTD)로 추정한다.

$$BTD_t = \alpha_1 TA_t + \epsilon_t \quad \text{식 (4)}$$

BTD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기초 총자산으로 나눈 값 ;
 TA = 총 발생액(당기순이익-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기초 총자산으로 나눈 값 ;
 ϵ = 조세회피 측정치(DD_BTD).

6) 법인세부담액=법인세비용+(당기말 이연법인세자산-전기말 이연법인세자산)-(당기말 이연법인세부채-전기말 이연법인세부채). 법인세 최고세율은 법인세율에 (1+지방소득세율)을 곱하여 추정하며, 2012년에서 2016년까지 24.2%로 추정하였다.

다.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사외이사 집단에서 특히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구분하기 위하여 우선 상장사협의회 데이터베이스 TS-2000에서 사외이사에서 “국세청”, “국세공무원”, “세무공무원”의 경력을 지닌 사외이사를 추출하였다. 분석의 정확성을 위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각 기업별로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일일이 검토하였다. 각 기업별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이사회에 관한 사항과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우선 추출한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 자료와 비교·대조하였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새로 입수하게 된 정보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사업보고서에 경력이 세무사무소 대표로만 기재되어 있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해당 세무사무소 홈페이지에 기재된 해당 사외이사가 국세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기재되어 있다면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에 포함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보유한 기업의 *taxod* 변수에 1의 값을 부여하였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라. 실증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룹사의 조세회피 수준에 지분율과 리도와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 지분율과 리도와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의 상호작용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식 (5)를 분석모형으로 제시한다.

$$\begin{aligned} Tax\ Avoidance_t = & \alpha_0 + \alpha_1 wedge_t + \alpha_2 taxod_t + \alpha_3 wod_t + \alpha_4 size_t + \alpha_5 roa_t \\ & + \alpha_6 lev_t + \alpha_7 inven_t + \alpha_8 mtb_t + \alpha_9 ocf_t + \alpha_{10} large \\ & + ind + year + \epsilon_t \end{aligned} \quad \text{식 (5)}$$

Tax Avoidance = 조세회피 측정치(GAAP-ETR, CASH-ETR, BTD, DD_BTD) ;

wedge = 지분율과 리도(통제권-소유권) ;

taxod =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보유하는 경우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

wod = 지분율과 리도×국세청 출신 사외이사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자산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

roa = 당기순이익/자산총액 ;

lev = 부채총액/자산총액 ;

inven = 재고자산/자산총액 ;

mtb = 시가총액/자본의 장부가치 ;

ocf = 영업현금흐름/자산총액 ;

large = 대주주지분율 ;

ind = 산업더미 ;

year = 연도더미 ;

ϵ = 잔차.

식 (5)에서 각각의 종속변수마다 관심변수와 통제변수를 대응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본 연구에서의 관심변수는 *wod*이며 이를 통해서 지분율피리도와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의 상호작용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볼 수 있다. 만약,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보유한 그룹사와 지분율피리도와의 상호작용 변수가 종속변수와 양(+)의 관계가 나타나면,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보유한 그룹사의 지분율피리도가 커질수록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해당 그룹사의 조세회피에 기여한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통제변수로 기업규모(*size*), 총자산이익률(*roa*), 부채비율(*lev*), 재고자산비율(*inven*), 시가-장부가 비율(*mtb*), 영업현금흐름비율(*ocf*)을 포함하였다. 기업규모(*size*)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조세회피 수단이 다양해질 수 있으나 규모가 큰 기업은 규제당국의 주목이 커질 수 있으므로 선행연구를 따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기업규모(*size*) 변수의 부호는 조세회피에 대해서 양방향의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므로 예측하기 어렵다. 총자산이익률(*roa*)은 수익성이 높을수록 부담하여야 할 조세비용도 높아지므로 이를 절감하려는 동기가 커질 수 있기에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부채비율(*lev*)의 경우도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이자비용을 통한 감세효과로 인하여 조세회피에 소극적일 수 있기에, 즉 절세의 수단으로 부채가 사용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시가-장부가 비율(*mtb*)은 성장성에 대해서 포착하는 통제변수로, 기업의 성장률이 높다면 조세회피와는 음(-)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선행연구를 따라 포함하였다. 영업현금흐름을 자산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영업현금흐름비율(*ocf*)은 조세비용은 기업의 직접적인 현금 유출과 관련이 있기에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재고자산비율(*inven*)은 대량의 재고자산은 조세회피와 음(-)의 관련을 갖는다는 연구를 따라 포함하였다(이 건 외 2015 ; 이윤경 2015 ; 최규담 외 2015 ; 서영미 2017 ; Gupta et al. 1997 ; Jae Yong Shin et al. 2018). 또한 임태균 외(2016)에서 대주주지분율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도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지분율피리도에 따른 대규모 기업집단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주주지분율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소유권과 관련이 없다)과 세 번째 가설(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통제권과 관련이 없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식 (6)과 식 (7)을 설정하였다.

$$\begin{aligned} Tax\ Avoidance_t = & \alpha_0 + \alpha_1 cright_t + \alpha_2 taxod_t + \alpha_3 cwod_t + \alpha_4 size_t + \alpha_5 roa_t \\ & + \alpha_6 lev_t + \alpha_7 inven_t + \alpha_8 mtb + \alpha_9 ocf + \alpha_{10} large \\ & + ind + year + \epsilon_t \end{aligned} \quad \text{식 (6)}$$

Tax Avoidance = 조세회피 측정치(GAAP-ETR, CASH-ETR, BT, DD_BT) ;

cright = 소유권 ;

taxod =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보유하는 경우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

cwod = 소유권×국세청 출신 사외이사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자산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
roa	= 당기순이익/자산총액 ;
lev	= 부채총액/자산총액 ;
inven	= 재고자산/자산총액 ;
mtb	= 시가총액/자본의 장부가치 ;
ocf	= 영업현금흐름/자산총액 ;
large	= 대주주지분율 ;
ind	= 산업더미 ;
year	= 연도더미 ;
ϵ	= 잔차.

$$\begin{aligned}
 Tax\ Avoidance_t = & \alpha_0 + \alpha_1 vright_t + \alpha_2 taxod_t + \alpha_3 vwod_t + \alpha_4 size_t + \alpha_5 roa_t \\
 & + \alpha_6 lev_t + \alpha_7 inven_t + \alpha_8 mtb_t + \alpha_9 ocf_t + \alpha_{10} large \\
 & + ind + year + \epsilon_t
 \end{aligned}
 \quad \text{식 (7)}$$

Tax Avoidance	= 조세회피 측정치(GAAP-ETR, CASH-ETR, BTD, DD_BTD) ;
vright	= 통제권 ;
taxod	=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보유하는 경우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
vwod	= 통제권 ×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자산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
roa	= 당기순이익/자산총액 ;
lev	= 부채총액/자산총액 ;
inven	= 재고자산/자산총액 ;
mtb	= 시가총액/자본의 장부가치 ;
ocf	= 영업현금흐름/자산총액 ;
large	= 대주주지분율 ;
ind	= 산업더미 ;
year	= 연도더미 ;
ϵ	= 잔차

2. 연구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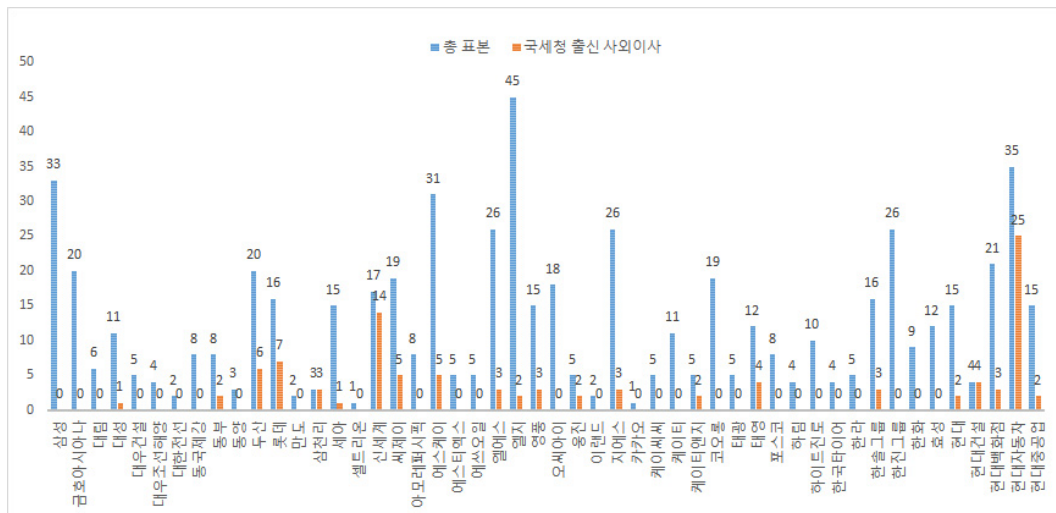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1) 12월말 결산법인이고,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2)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에서 지분율과리도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기업
- (3) 상장회사협회의 TS-2000 데이터에서 사외이사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업
-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사외이사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업

- (5) 조세회피 측정치를 모두 구할 수 있는 기업
- (6) 통제변수를 위하여 연결재무자료를 모두 입수할 수 있는 기업
- (7) 세전이익이 음(-)이 아닌 기업
- (8) 주요 연속변수의 상·하위 3%를 초과하지 않는 표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 중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에 관한 정보는 TS-2000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했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통해 재확인 및 수정하였다. 재무자료는 KIS-VALUE에서 추출했다. 연구에 사용된 연속변수는 상·하위 3% 수준에서 윈저화(winsorizing)하였다.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보유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대규모 기업집단의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 분포



IV.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표 1>에서는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낸다. 먼저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지닌 임원을 보유하는 기업을 나타내는 변수인 taxod의 평균은 0.159로, 분석대상 표본의 약 16%는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권에서 소유권을 차감

한 지분율피리도(wedge)의 평균값은 35.2%로 나타났다. 동일인이 기업에 대해 본인의 소유권보다 35% 이상의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즉,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의 지배주주들이 피라미드 형태와 계열사 및 특수 관계자 등을 통한 복잡한 순환출자의 지배구조를 통해, 자신들이 직접 보유한 주식 지분보다 훨씬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현정훈 외 2013).

기업규모(size)와 회계성과(roa)의 평균과 중위수는 각각 28.78와 0.012, 28.789와 0.022로 나타났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비율(ocf)의 평균은 5.3%이었으며, 부채비율(lev)의 평균은 73%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채고자산비율과 시가-장부가 비율의 평균은 각각 0.183과 1.138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분율피리도와는 별개로 분석에 사용된 기업들의 대주주지분율의 평균값은 약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기술통계량

변수	N	평균	중위수	표준 편차	제1 백분위수	제25 백분위수	제75 백분위수	제99 백분위수
gaap-etr	638	0.298	0.264	0.647	-1.348	0	0.385	4.713
cash-etr	638	0.190	0.126	1.183	-4.331	-0.109	0.342	6.866
btd	638	0.026	0.019	0.114	-0.468	-0.015	0.074	0.409
res	638	-0.0005	-0.009	0.107	-0.319	-0.057	0.047	0.376
wedge	638	35.233	34.72	19.101	0	21.3	47.86	86.46
cright	638	6.936	0.13	11.802	0	0	9.83	49.97
vright	638	42.271	41.565	18.821	0.19	30.91	54.3	88.55
taxod	638	0.159	0	0.366	0	0	0	1
wod	638	5.737	0	14.312	0	0	0	60.26
cwod	638	1.274	0	5.015	0	0	0	29.65
vwod	638	7.077	0	17.162	0	0	0	68.59
size	638	28.78	28.789	1.408	25.951	27.757	29.696	32.233
roa	638	0.012	0.022	0.077	-0.463	-0.0003	0.045	0.139
lev	638	0.730	0.490	1.432	0.011	0.267	0.627	10.996
inven	638	0.183	0.117	0.259	0.0004	0.046	0.211	1.812
mtb	638	1.138	0.832	1.038	0	0.509	1.359	5.801
ocf	638	0.053	0.050	0.061	-0.136	0.017	0.087	0.210
large	638	29.887	26.865	16.104	5.54	17.61	38	79

<변수설명>

GAAP-ETR	= 식 (1)을 통해 추정된 회계상 유효세율 ;
CASH-ETR	= 식 (2)를 통해 추정된 현금유효세율 ;
BTD	= 식 (3)을 통해 추정된 회계 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
DD_BTD	= 식 (4)를 통해 추정된 Desai and Dharmapala (2006)의 조세회피 추정치 ;
wedge	= 지분율피리도(통제권-소유권) ;
cright	= 소유권 ;
vrigh	= 통제권 ;
taxod	=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보유하는 경우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
wod	= 지분율피리도×국세청 출신 사외이사의 상호작용 변수 ;
cwod	= 소유권×국세청 출신 사외이사의 상호작용 변수 ;
vwod	= 통제권×국세청 출신 사외이사의 상호작용 변수 ;
size	= 자산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
roa	= 당기순이익/자산총액 ;
lev	= 부채총액/자산총액 ;
inven	= 재고자산/자산총액 ;
mtb	= 시가총액/자본의 장부가치 ;
ocf	= 영업현금흐름/자산총액 ;
large	= 대주주지분율.

<표 2> 피어슨 상관관계에서는 조세회피 측정치 간에는 1% 유의수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분율피리도(wedge)와 소유권(crigh), 통제권(vrigh)도 1%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네 가지 조세회피 측정치(gaap-etr, cash-etr, btd, dd_btd)와 지분율피리도(wedge)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는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와도 마찬가지이다. <표 2>에 의하면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는 조세회피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지분율피리도가 존재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에,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갖는지에 대해서 추가분석이 필요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일부의 선행연구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지분율피리도가 높을 경우 조세회피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경영권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분율피리도를 관심변수로 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서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상반되는 선행연구에 비추어 추가적인 실증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표 2〉 피어슨 상관관계

	gaapetr	cashetr	bid	res	wedge	cright	vright	taxod	wod	cwod	vwod	size	roa	lev	inven	mtb	ocf	large
gaapetr	1																	
cashetr	0.112 (0.004)	1																
bid	0.043 (0.271)	0.038 (0.332)	1															
res	-0.009 (0.810)	-0.003 (0.927)	0.805 (0.0001)	1														
wedge	-0.020 (0.605)	0.017 (0.656)	-0.026 (0.504)	-0.029 (0.457)	1													
cright	0.084 (0.033)	0.028 (0.468)	0.011 (0.763)	-0.042 (0.278)	-0.349 (0.0001)	1												
vright	0.034 (0.39)	0.036 (0.357)	-0.016 (0.683)	-0.054 (0.173)	0.795 (0.0001)	0.287 (0.0001)	1											
taxod	0.060 (0.128)	-0.050 (0.2)	0.094 (0.017)	0.047 (0.228)	0.028 (0.474)	0.042 (0.284)	0.053 (0.18)	1										
wod	0.032 (0.412)	-0.045 (0.251)	0.066 (0.094)	0.026 (0.504)	0.150 (0.0001)	-0.020 (0.607)	0.137 (0.0005)	0.919 (0.0001)	1									
cwod	0.138 (0.0004)	-0.047 (0.235)	0.030 (0.438)	-0.015 (0.687)	-0.091 (0.02)	0.311 (0.0001)	0.100 (0.01)	0.582 (0.0001)	0.398 (0.0001)	1								
vwod	0.069 (0.081)	-0.053 (0.175)	0.065 (0.096)	0.018 (0.645)	0.103 (0.009)	0.074 (0.06)	0.149 (0.0002)	0.946 (0.0001)	0.962 (0.0001)	0.629 (0.0001)	1							
size	0.052 (0.188)	-0.010 (0.786)	0.093 (0.018)	0.080 (0.041)	-0.304 (0.0001)	-0.221 (0.0001)	-0.452 (0.0001)	0.111 (0.004)	0.089 (0.023)	-0.042 (0.284)	0.061 (0.118)	1						
roa	0.128 (0.001)	0.021 (0.58)	0.638 (0.0001)	0.319 (0.0001)	-0.067 (0.087)	0.040 (0.311)	-0.043 (0.267)	0.096 (0.015)	0.048 (0.219)	0.053 (0.175)	0.056 (0.155)	0.140 (0.0004)	1					
lev	-0.006 (0.863)	0.035 (0.369)	-0.091 (0.021)	-0.051 (0.195)	-0.134 (0.0007)	-0.083 (0.035)	-0.190 (0.0001)	-0.014 (0.712)	-0.021 (0.591)	-0.014 (0.707)	-0.023 (0.56)	0.233 (0.0001)	-0.102 (0.009)	1				
inven	0.074 (0.06)	-0.064 (0.106)	0.169 (0.0001)	0.121 (0.002)	-0.073 (0.061)	0.218 (0.0001)	0.077 (0.05)	-0.019 (0.629)	-0.008 (0.837)	0.008 (0.838)	-0.002 (0.958)	0.005 (0.895)	0.132 (0.0008)	-0.089 (0.024)	1			
mtb	0.010 (0.787)	-0.011 (0.777)	0.117 (0.003)	0.142 (0.0003)	-0.064 (0.105)	-0.158 (0.0001)	-0.169 (0.0001)	-0.039 (0.315)	-0.074 (0.06)	0.014 (0.711)	-0.057 (0.145)	-0.088 (0.024)	0.204 (0.0001)	-0.067 (0.088)	-0.098 (0.012)	1		
ocf	0.042 (0.28)	-0.062 (0.116)	0.265 (0.0001)	0.578 (0.0001)	-0.051 (0.19)	-0.064 (0.103)	-0.095 (0.016)	0.023 (0.561)	-0.013 (0.739)	-0.023 (0.553)	-0.018 (0.632)	0.098 (0.013)	0.431 (0.0001)	-0.041 (0.298)	0.031 (0.432)	0.279 (0.0001)	1	
large	-0.027 (0.489)	-0.0002 (0.995)	-0.070 (0.074)	-0.076 (0.053)	0.609 (0.0001)	-0.329 (0.0001)	0.414 (0.0001)	-0.021 (0.584)	0.077 (0.05)	-0.069 (0.079)	0.046 (0.238)	-0.293 (0.0001)	-0.066 (0.091)	-0.085 (0.030)	-0.057 (0.148)	0.025 (0.515)	-0.062 (0.113)	1

1) 변수설명은 <표 1>을 참조

2) 기재된 수치는 Pearson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각 셀의 상단에 기재된 수치는 변수 간 상관계수이고, 하단에는 p-value이다.

2. 회귀분석 결과

<표 3>과 <표 4>에서는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해당 그룹사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가설 1에 의하면,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는 지분율과 리도에 따른 대규모 기업집단의 조세회피와 무관할 것을 예상하였다.

<표 3>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Tax\ Avoidance_t = \alpha_0 + \alpha_1 wedge_t + \alpha_2 taxod_t + \alpha_3 size_t + \alpha_4 roa_t + \alpha_5 lev_t + \alpha_6 inven_t + \alpha_7 mtb_t + \alpha_8 ocf_t + \alpha_9 large_t + ind + year + \epsilon_t$$

	GAAP-ETR		CASH-ETR		BTD		DD_BTD	
	estimate	t-stat	estimate	t-stat	estimate	t-stat	estimate	t-stat
Intercept	0.020	0.03	-0.181	-0.29	-0.008	-0.13	-0.088	-1.23
wedge	0.00009	0.05	-0.0004	-0.22	0.0002	1.3	0.0002	1.05
taxod	0.076	1.07	-0.08	-1.11	0.007	0.94	0.005	0.72
size	0.013	0.68	-0.005	-0.25	0.0004	0.21	0.001	0.48
roa	0.926	2.42	0.929	1.54	1.068	16.79***	0.092	1.36
lev	0.004	0.21	0.046	1.15	-0.001	-0.24	-0.0006	-0.14
inven	0.031	0.29	0.248	1.52	0.034	2.01**	0.044	2.37**
mtb	0.005	0.19	-0.009	-0.3	0.0004	0.13	-0.0004	-0.13
ocf	-0.223	-0.47	-0.848	-1.56	0.003	0.07	0.990	16.06***
large	-0.0004	-0.24	-0.0008	-0.38	-0.0002	-1.21	-0.0003	-1.33
연도더미	포함							
산업더미	포함							
F-stat.	1.68 ($<.0001$)		6.62 ($<.0001$)		31.32 ($<.0001$)		27.88 ($<.0001$)	
Adj R-Sq	0.016		0.123		0.432		0.403	
n	638							

1) 변수 설명은 <표 1>을 참고.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의 유의미함을 의미

<표 3>은 상호작용 변수를 제외한 결과로서, 조세회피 측정치에 지분율과 리도와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미치는 영향은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 섞여 있으며 유의하지 않다. 조세회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진 통제변수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규모(SIZE)는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경영성과(ROA)는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대체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이 증대되면 과세소득도 증대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채비율(LEV)의 경우, 조세회피 측정치가 ETR인

계열에서는 양(+), BTD 계열에서는 부(-)의 결과가 나타났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시가-장부가 비율(mtb)은 기업의 성장률이 높다면 조세회피와는 음(-)의 관계를 가질 것을 예상하였으나, 재벌기업들은 기업수명주기에 의하면 완숙기 기업이기도 하므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력은 혼재되어 있다. 영업현금흐름비율(ocf)은 조세비용은 기업의 직접적인 현금 유출과 관련이 있지만 분석결과는 종속변수에 따라 혼재되어 있다. 재고자산비율(inven)은 대량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조세회피에 더 적극적이었으며, 대주주지분율(large)이 높을수록 조세회피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나 본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표 4>에서는 지분율과리도와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의 상호작용 변수(wod)를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4>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분율과리도에 따른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⁷⁾

$$Tax\ Avoidance_t = \alpha_0 + \alpha_1 wedge_t + \alpha_2 taxod_t + \alpha_3 wod_t + \alpha_4 size_t + \alpha_5 roa_t + \alpha_6 lev_t + \alpha_7 inven_t + \alpha_8 mtb_t + \alpha_9 ocf_t + \alpha_{10} large_t + ind + year + \epsilon_t$$

	GAAP-ETR		CASH-ETR		BTD		DD_BTD	
	estimate	t-stat	estimate	t-stat	estimate	t-stat	estimate	t-stat
Intercept	0.120	0.36	-0.192	-0.3	-0.00402	-0.06	-0.08586	-1.18
wedge	0.0003	0.38	-0.0003	-0.18	0.0002	1.12	0.0002	0.96
taxod	0.019	0.18	-0.054	-0.26	-0.004	-0.22	0.00005	0
wod	0.0004	0.15	-0.0007	-0.13	0.0003	0.57	0.0001	0.26
size	0.007	0.64	-0.005	-0.23	0.0003	0.15	0.001	0.46
roa	1.682	5.4***	0.922	1.53	1.071	16.77***	0.094	1.38
lev	0.014	0.71	0.046	1.14	-0.0009	-0.22	-0.0006	-0.13
inven	-0.070	-0.83	0.250	1.53	0.034	1.97**	0.043	2.35**
mtb	0.002	0.13	-0.009	-0.31	0.0005	0.15	-0.0004	-0.12
ocf	-0.175	-0.63	-0.848	-1.56	0.003	0.06	0.990	16.05***
large	-0.0004	-0.4	-0.0008	-0.37	-0.0002	-1.23	-0.0003	-1.34
연도더미	포함							
산업더미	포함							
F-stat.	3.56 ($<.0001$)		6.23 ($<.0001$)		29.47 ($<.0001$)		26.2 ($<.0001$)	
Adj R-Sq	0.064		0.122		0.431		0.402	
n	638							

1) 변수 설명은 <표 1>을 참고.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의 유의미함을 의미

7) 지분율과리도를 상·하위 25%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 <표 4>와 다르지 않았다.

<표 4>는 <표 3>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지분율피리도가 높아지는 경우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는 조세회피에 기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은 사외이사의 역할 한계와 과세당국의 주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가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다. 이사회 회의내용은 사업보고서에 기재되어 공시되고, 이사회 회의는 기업의 거시적인 경영방향을 다루는 의결기구이지, 조세회피라는 특정 주제에 관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을 다루는 회의는 아니다. 그렇기에 기업의 최고위 의결기구로서 이사회 회의는 세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들이 그들의 배경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설령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들이 각종 세법 조항을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여도, 이러한 조력 활동이 재무자료에 수직화되어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회피로 적발되는 것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재벌기업과 같은 대규모 기업집단은 과세당국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매년 과세당국에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재벌기업들의 조세회피에 관한 유인은 충분하지만, 조세회피 행위가 과세당국에 적발되었을 경우 기업이 감당하여야 하는 비용도 또한 엄청나다. 언론으로부터 부정적인 주목을 받아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기도 하며, 조세회피 행위를 통한 세금포탈에 따른 상당한 추정금도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세청에서 고위공직자로 근무하였던 사외이사들이 이러한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기업의 조세회피에 적극 조력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고위직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와 명예·명성을 중시하기에 적극적으로 조세회피에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와 <표 6>에서는 지분율피리도를 소유권과 통제권으로 구분하여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표 5>와 <표 6>의 관심변수는 *cod*와 *vod*이고, 이는 각각 소유권과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의 상호작용변수, 통제권과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의 상호작용 변수이며, 이러한 관심변수를 통해서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소유권이 커질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분율피리도 자체도 조세회피와 무관하였고,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분율피리도의 구성요소인 소유권과 통제권도 조세회피와 무관하였고, 특히 지분율피리도의 각 구성요소별 관심변수인 상호작용변수들도 해당 기업의 조세회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5〉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소유권)

$$Tax\ Avoidance_t = \alpha_0 + \alpha_1 cright_t + \alpha_2 taxod_t + \alpha_3 cwod_t + \alpha_4 size_t + \alpha_5 roa_t + \alpha_6 lev_t \\ + \alpha_7 inven_t + \alpha_8 mtb_t + \alpha_9 ocf_t + \alpha_{10} large_t + ind + year + \epsilon_t$$

	GAAP-ETR		CASH-ETR		BTD		DD_BTD	
	estimate	t-stat	estimate	t-stat	estimate	t-stat	estimate	t-stat
Intercept	-0.597	-0.92	-0.312	-0.27	0.076	0.86	-0.0145	-0.16
cright	0.003	1.3	0.002	0.6	-0.0005	-1.5	-0.0005	-1.42
taxod	-0.077	-0.89	-0.097	-0.61	0.016	1.34	0.013	1.14
cwod	0.018	2.75**	-0.009	-0.77	-0.0006	-0.74	-0.0006	-0.7
size	0.032	1.53	-0.003	-0.09	-0.001	-0.61	-0.0008	-0.27
roa	0.851	2.23**	0.871	1.26	0.922	17.6***	0.091	1.76
lev	0.003	0.2	0.008	0.24	-0.002	-0.76	-0.001	-0.47
inven	-0.018	-0.16	0.059	0.3	0.0422	2.75**	0.041	2.75**
mtb	0.007	0.28	-0.015	-0.32	-0.0005	-0.14	-0.001	-0.55
ocf	-0.146	-0.31	-1.431	-1.66*	-0.008	-0.13	0.956	14.78***
large	0.001	0.7	0.0009	0.29	-0.0004	-1.6	-0.0004	-1.58
연도더미	포함							
산업더미	포함							
F-stat.	2.37 (<.0001)		3.26 (<.0001)		27.57 (<.0001)		20.99 (<.0001)	
Adj R-Sq	0.035		0.056		0.414		0.347	
n	638							

1) 변수 설명은 <표 1>을 참고.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의 유의미함을 의미

〈표 6〉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통제권)

$$Tax\ Avoidnace_t = \alpha_0 + \alpha_1 vright_t + \alpha_2 taxod_t + \alpha_3 vwod_t + \alpha_4 size_t + \alpha_5 roa_t + \alpha_6 lev_t + \alpha_7 inven_t + \alpha_8 mtb_t + \alpha_9 ocf_t + \alpha_{10} large_t + ind + year + \epsilon_t$$

	GAAP-ETR		CASH-ETR		BTD		DD_BTD	
	estimate	t-stat	estimate	t-stat	estimate	t-stat	estimate	t-stat
Intercept	-0.418	-0.63	-0.470	-0.4	0.005	0.07	-0.067	-0.76
vright	0.002	1.39	0.002	0.68	0.00003	0.14	-0.00004	-0.2
taxod	-0.165	-0.73	0.083	0.2	0.022	0.71	0.016	0.53
vwod	0.005	1.06	-0.005	-0.67	-0.0002	-0.42	-0.0001	-0.29
size	0.026	1.22	0.0002	0.01	0.0002	0.09	0.0008	0.27
roa	0.922	2.41**	0.856	1.24	0.913	17.39***	0.083	1.6
lev	0.0069	0.35	0.00967	0.27	-0.00193	-0.71	-0.001	-0.46
inven	0.00233	0.02	0.07875	0.4	0.03655	2.42**	0.036	2.47**
mtb	0.015	0.57	-0.015	-0.32	0.0004	0.13	-0.001	-0.37
ocf	-0.196	-0.41	-1.453	-1.69*	-0.003	-0.06	0.961	14.82***
large	-0.001	-0.93	-0.0001	-0.03	-0.0002	-0.83	-0.0001	-0.75
연도더미	포함							
산업더미	포함							
F-stat.	1.81 (<.0001)		3.26 (<0.0001)		27.19 (<.0001)		20.68 (<.0001)	
Adj R-Sq	0.021		0.056		0.411		0.344	
n	638							

1) 변수 설명은 <표 1>을 참고.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의 유의미함을 의미

V. 결 론

김현진 외(2019)에 따르면 조세회피 활동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상기 선행연구에서는 설명변수로 최고경영자의 경영권에 대한 변수 정의에서 경영자 현금보상을 상근등기임원의 총 보상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였고, 30대 재벌기업을 더미변수로 포함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분석해볼 수 있는 지분율과리도를 설명변수로 선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분

율과리도와 조세회피 정도가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분율과리도가 발생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이들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지분율과리도가 발생하는 재벌 기업에 선임된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의 조세회피에 기여하지 않았다.

기업의 최고위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일원인 사외이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가하여 기업경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조세전략은 이사회 안건과는 별도로 있다.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조세전략을 이사회에서 회의내용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기업이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 선임의 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이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이유는 직접적이고 사전적인 조세회피 전략에 의한다기 보다는 사후관리 목적으로 국세청과의 관계 또는 세무완충역할 및 세금자문역할을 위탁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사업 영역에서 개별 사안별로 세법적 측면에서 살펴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입장에 대한 의견청취를 통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려 한다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는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 선임의 이유가 될 것이다.

국세청의 고위직으로 근무하였던 고위공직자 출신의 사외이사는 정치적·사회적 연결고리와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조사 결과 해당 기업이 조세포탈로 인하여 언론과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된다면, 고위공직자 출신 사외이사는 자신들이 지켜온 명성과 명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조세회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위험에 자신들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방대하고 매년 개정되는 세법조항들을 기업에 유리하게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겠으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조세회피에 적극 가담하여 기업의 공시 재무수치를 변화시키는 것까지 그들의 역할이 확장되어 있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의 조세회피가 적발될 경우 자신의 평판훼손과 책임소지의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세포탈 징후로 인하여 기업이 추징을 당하게 되면, 기업은 언론과 당국으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주목은 기업이 향후 경영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세회피로 인해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정치적·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기에,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는 적극적으로 조세회피에 가담하여 자신들의 조세회피 행위로 인해 오히려 기업이 위험 상황에 놓이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또 다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제반 상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향후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의 확장 및 관련변수의 추가 등을 통해, 더욱 일반적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정연 · 고종권. 2014.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9권 제1호 : 147-183.
- 고윤성. 2008. “기업특성에 따른 세무조정형태”.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1호 : 63-94.
- _____. 김지홍 · 최원욱. 2007.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7권 제4호 : 9-40.
- 권대현 · 최종학 · 신재용 · 현정훈. 2012. “지배주주-소액주주 간 대리인문제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특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7권 제1호 : 121-155.
- 김명인 · _____. 2008. “지배권과 소유권의 차이로 측정한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보수주의 사의의 관계”. 회계 · 세무와감사연구 제47호 : 181-210.
- 김현진 · 최원주 · 김은태. 2019. “최고경영자의 경영권 수준과 조세회피 : 국세청 출신의 사외이사 선임여부를 고려하여”. 경영정보연구 제34권 제2호 : 21-46.
- 김효진 · 윤순석. 2010. “소유지배피리도가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28권 제2호 : 1-32.
- 박범진. 2019. “소유지배피리도와 사외이사 보상 중요성 간의 관련성 : 기회주의적 목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제32권 제5호 : 1931-1955.
- 박준호 · 이장우. 2019. “기업의 정치적 활동 : 전직 관료 영입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 263-284.
- 서영미. 2017. “소유지배피리도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30권 제4호 : 559-578.
- 선우혜정 · 최종학 · 이병희. 2010. “지분율 피리도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오차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5권 제2호 : 1-34.
- 심호식 · 이문영 · 최종학. 2010. “지분율 피리도와 공시 정보의 빈도 사이의 관계”. 회계학연구. 제35권 제4호 : 39-74.
- 윤용석 · 이 건 · 이한상 · 한승수. 2015.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여부가 임원의 개인별 보수 공시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44권 제4호 : 1071-1103.
- 이 건 · 신재은 · 이만우. 2015. “임원의 세무전문성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3호 : 137-170.
- 이문영 · 심호식 · 최종학. 2012.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이사회 특성과 공시 빈도 사이의 관계”. 회계학연구 제37권 제2호 : 279-320.
- 이윤경. 2015. “소유지배피리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2권 제3호 : 89-111.
- _____. 2015. “소유지배피리도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제22권 제6호 : 87-103.

- 이창민 · 정준영. 2017. “관료 출신 사외이사는 기업에 기여하는가? 금융회사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재무관리연구. 제34권 제4호 : 159–195.
- 이현주 · 정현욱 · 이강일. 2013. “지분율과리도가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1호 : 9–30.
- 이 홍. 2000. “한국 기업집단의 강제적 동질성(isomorphism)을 수반한 모집단학습 :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의 비교”. 경영과학 제17권 제1호 : 87–115.
- 임태균 · 허준영 · 배성호 · 정석우. 2015. “관료출신 사외이사의 선임여부, 선임여부의 변화 및 선임비율에 따른 기업가치의 차이 –유가증권시장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44권 제5호 : 1305–1326.
- _____. 정석우 · 정남철. 2016. “사외이사의 출신집단에 따른 기업가치의 차이”.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4호 : 97–122.
- 정현욱 · 이현주. 2015. “지분율과리도가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33권 제1호 : 101–124.
- 최규담 · 김갑순 · 유현수. 2015. “경영전략과 조세회피”. 회계학연구 제40권 제5호 : 271–326.
- 최기호. 2018. “조세회피와 관련된 세무회계 실증 연구 동향”. 세무학연구 제35권 제4호 : 207–275.
- 현정훈 · 황인이 · 신재용 · 김범준. 2013. “지배주주–소액주주 간 대리인문제와 사외이사 보상”, 회계저널, 제22권 제3호 : 1–29.
- Claessens, Stijn, Simeon Djankov, Joseph Fan, and Larry Lang. 2002. Disentangling the incentive and entrenchment effects of large shareholdings. *Journal of Finance*, 57 : 2379–2408.
- _____, ____, _____, and Larry Lang. 2000.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in East Asian corporatio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8 : 81–112.
- Desai, M. and D. Dharmapala. 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 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 : 145–179.
- Dyreng, S. D., M. Hanlon, and E. L. Maydew. 2010. The effects of executives on corporate tax avoidance. *The Accounting Review* 85(4) : 1163–1189.
- Faccio, M. 2010. Differences between politically connected and nonconnected firms : A cross-country analysis. *Financial Management* 39 : 905–927.
- Gupta, S., and K. Newberry. 1997. Determinants of the variability in corporate effective tax rates : Evidence from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6 (1) : 1–34.
- Hanlon, M., and S. Heitzman. 2010. A review of tax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2) : 127–178.

- Jae Yong Shin, Jeong-Hoon Hyun, Seungbin Oh, and Hongsuk Yang. 2018. The Effects of politically connected outside directors on firm performance : Evedence from Korean chaebol firms. *Corporate Governance International Review* 26 : 23-44.
- Kim, J. -B., and C. H. Yi. 2006. Ownership Structure, Business Group Affiliation, Listing Status and Earnings Management : Evidence from Korea.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3 (2) : 427-464.
- Lemmon, Michael L., Karl V. Lins. 2003. Ownership Structure,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Value : Evidence from East Asian Financial Crisis. *Journal of Finance*, 58 : 1445-1468.
- Lins, Karl. 2003. Equity Ownership and Firm Value in Emerging Markets.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 159-184.
- Nienhüser, Werner. 2008. Resource dependence theory : How well does it explain behavior of organizations?. *Management Revue*, 19(1/2) : 9-32.
- Zheng, W., Singh, K., and Mitchell, W. 2015. Buffering and enabling : The impact of interlocking political ties on firm survival and sales growth.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6(11) : 1615-1636.

The Effect of Specific Outside Directors to Tax Avoidance on Wedge in Chaebols

Uni, Im* · Hee—Woo, Park**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companies belonging to a chaebol on the tax avoidance of a government agency when a senior official with career in the National Tax Service has been appointed as an outside director. Based on the large—scale business group data presented in the Fair Trade Commission’s corporate group portal, the company’s wedge was calculated and used as a variabl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the external directors of the National Tax Service, who were elected to a large group of companies with a degree of wedge,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company’s tax avoidance. This was also true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wedge as components.

For this reason, it is believed that the cause of the board’s characteristics is attributed to it. The board of directors, which is the company’s top decision—making body, discloses the details of the meeting, so it does not cover practical and detailed strategic aspects. In addition, if tax evasion is found through tax investigations and receives attention from taxation agencies, the cost to the company is also considerable.

Because outside directors from high—ranking tax offices value their political and social networks and their reputation, they will not be willing directly to engage in tax evasion, which is quantified and disclosed in financial statements, to endure these risks.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outside directors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will supplement their roles, and they do not play a leading role in realistic tax evasion of the company.

〈Key words〉 Tax Avoidance, Wedge, Cash—Flow Rights, Voting Rights, Outside Directors from National Tax Service

* Ph. D.,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uniqu22@catholic.ac.kr, First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hwcpa@catholic.ac.kr, Corresponding Author